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. 7. 4

나. 제 출 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1. 7. 4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88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1. 7. 1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세정과장 박명호)

가. 제안이유

○ 석유사업법 개정(2000. 1. 28 제6228호)으로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됨에 따라,

○ 석유판매업 등록(신고) 신청 수수료의 자체 원가분석을 실시, 원가분석액만큼 수수료율을 정하여 조례에 신설

나. 주요골자

○ 석유판매업 등록(신고)신청시 수수료 징수(안 제3조)

• 석유판매업(주유소)등록신청 : 건당 20,000원

• 석유판매업(용·제판매소)등록신청 : 건당 13,000원

• 석유판매업(일반판매소)신고 : 건당 4,000원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석유판매업 등록(신고)신청시 수수료 징수가 전에는 없었습니까? ○ 허가, 신고의 차이는? ○ 기존허가자도 해당됩니까?	○ 석유사업법에서 규정하여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법에서는 폐지되었습니다. ○ 일반판매소는 신고사항으로 수리하여 처리하며, 주유소는 등록사항으로 허가처리합니다. ○ 앞으로 신규자에 해당됩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494호
의결년월일	2001. 7. 14 (제88회)

제출년월일 : 2001. 7. 4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석유사업법 개정(2000. 1. 28 제6228호)으로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됨에 따라,

○ 석유판매업 등록(신고) 신청 수수료의 자체 원가분석을 실시, 원가분석액만큼 수수료율을 정하여 조례에 신설

□ 주요골자

○ 석유판매업 등록(신고) 신청시 수수료 징수(안 제3조)

• 석유판매업(주유소) 등록신청 : 건당 20,000원

• 석유판매업(용제판매소) 등록신청 : 건당 13,000원

• 석유판매업(일반판매소) 신고 : 건당 4,000원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별표의 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, 지정, 확인 등 제4호(3)란 다음에 (4) 내지 (6)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4) 석유판매업(주유소) 등록신청	1건	20,000원	
(5) 석유판매업(용제판매소) 등록신청	1건	13,000원	
(6) 석유판매업(일반판매소) 신고	1건	4,000원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(별표)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				(별표)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			
구 분	기준	요액	비고	구 분	기준	요액	비고
[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, 지정, 확인 등]				[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, 지정, 확인 등]			
1~3. (생략)				1~3. (현행과 같음)			
4.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				4.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			
(1)~(3) (생략)				(1)~(3) (현행과 같음)			
<신설>				(4)석유판매업 (주유소) 등록신청	1건	20,000원	
<신설>				(5)석유판매업 (용제판매소) 등록신청	1건	13,000원	
<신설>				(6)석유판매업 (일반판매소) 신고	1건	4,000원	